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8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6.
3. 회부연월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이를 주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9조(벌칙) ① <u>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u>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제14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u>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u> 2. <u>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벌칙) ----- ----- -----

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u> <u><신 설></u> 2. ~ 7. (생략) 제151조의2(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u> <u>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u>	-----. <u><삭 제></u> <u>1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u> 2. ~ 7. (현행과 같음) 제151조의2(벌칙) <u>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삭 제></u> <u><삭 제></u>
--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대 이상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¹⁾,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²⁾.

현행법은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³⁾,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1)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3)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 7. (생략)
- 4)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생략)

특히, 최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폭주족 등이 대열을 이뤄 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2024년 주요 기념일 폭주족 단속 결과>

구분	계	난폭운전	공동위험 행위	무면허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주운전	통고처분	기타
삼일절 (3.1)	531	2	0	17	65	27	420	0
제헌절 (7.17)	99	0	0	4	22	11	62	0
광복절 (8.15)	789	1	0	20	97	39	632	0
한글날 (10.9)	433	0	1*	5	12	30	380	5

※자료: 경찰청

다만,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1992년 신설당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0년 개정으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 위에서 폭주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정형을 상향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 운전문화 개선, 교통안전 교육의 확대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공동 위험행위 처벌수준 연혁>

도로교통법 개정일	처벌수준
'92. 12. 8. 신설	6월 이하 징역, 30만원 이하 벌금
'95. 1. 5. 개정	6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99. 1. 29. 개정	6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07. 12. 21. 개정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10. 7. 23. 개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자료: 경찰청

또한,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의 상향과 관련하여 이를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 다른 범죄들과 비교할 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형법」상 주요 형량별 법규위반 행위>

형량	도로교통법	형법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난폭운전(현행) - 초과속운전(100km ↑) - 음주운전(0.03 ~ 008)	- 음용수 사용방해(제192조) - 공연음란(제245조)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제364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공동위험행위(현행) - 부정 운전전문학원 지정 - 무자격 운전교습	- 폭행죄(제260조) - 학대죄(제273조) - 명예훼손죄(제307조) - 배임수증죄(제357조)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신호기 조작 - 교통안전시설 철거·이전·손괴	- 공무원자격사칭(제118조) - 법정모독죄(제138조) - 일반물건방화(167조) - 통화유사물제조(제211조)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제228조) -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

※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을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